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동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74
----------	-------

발의연월일 : 2026. 9. 18.

발 의 자 : 한동훈 · 박정하 · 한기호
조은희 · 진종오 · 배현진
박정훈 · 고동진 · 유용원
정연욱 · 정성국 · 김 건
안상훈 · 서범수 · 김예지
김성원 · 권영진 · 한지아
윤상현 · 우재준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비상임 위원장을 두고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함. 또한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 또는 위촉하도록 함.

그런데 이러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비상임화에 따라 선거가 없는 기간 동안 조직과 시스템을 상시 점검·관리할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현직 법관이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선거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

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위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 위원장을 상임화하는 한편 공직 등 일정한 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자격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전반적인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성을 높이하고자 함(안 제4조 등).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를 “교육자”로, “3인을”을 “6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관·교육자”를 “교육자”로,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위탁선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 후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이상
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자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자
3. 4급이상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

제5조제1항 중 “둔다”를 “두고 상임(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본문 중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제3항의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개표소마다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인을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를 “개표소마다 해

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부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을 “위원장·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상임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임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대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정무직으로서 부총리의 보수와 동액
2.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 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 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 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 명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① - -----다음 각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u> <u>중에서 대통령이</u> ----- ----- ----- ----- . ----- ----- ----- . 1. <u>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10</u> <u>년 이상 재직한 자</u> 2. <u>공인된 대학에서 행정학·정</u> <u>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u> <u>부교수이상의 직에 8년 이상</u> <u>재직한 자</u>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 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자
<신 설> <신 설>	② ----- ----- ----- -----
<신 설> ②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 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 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 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6인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위탁선거는 제외한다. 이하

-----교육자-----

-----6

인을-----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

③ -----

-----교육자-----

-----위촉하되, 정당이 추천하

는 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위

탁선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같다)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 후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법관을 우선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⑥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⑦ ~ ⑬ (생 략)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 후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자

3. 4급이상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⑥ 교육공무원-----

-----.

⑦ ~ ⑬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장)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② . ③ (생략)

<신설>

④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73조(개표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제3항의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개표소마다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인을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제5조(위원장) ① -----

-----두고 상임(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의 위원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상임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개표

소마다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부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6조(상임위원) 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은 60세로 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⑥ -----

---부위원장-----

-----위원장·부위원장-----

-----.

<삭 제>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

제12조(위원의 대우) ① (생략)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신설>

제12조(위원의 대우)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대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정무직으로서 부총리의 보수와 동액

2.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3급인 일반직국가공

③ (생 략)	<u>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u> <u>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u> <u>원</u> ③ (현행과 같음)
---------	--